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4. 13 조례 제2296호
일부개정 2023. 9. 27 조례 제2450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오수·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제4조(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1. 처리시설 유입량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70퍼센트 이내로 감경
2. 처리시설 유입량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이내로 감경
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이내로 감경
4. 처리시설 유입량이 60퍼센트 이하인 경우: 40퍼센트 이내로 감경
5. 처리시설 유입량이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30퍼센트 이내로 감경
6. 처리시설 유입량이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20퍼센트 이내로 감경

[제목개정 2023. 9.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2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오수·폐수 유입 처리 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23. 9. 27>

사용료 산출기준 (제4조 관련)

(M1, M2, M3, M4, M5, 단위 : 원)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BS = (M1 + M2 + M3 + M4 + M5) \times \left\{ 0.5 \frac{BLi}{\sum_{i=1}^n BLi} + 0.5 \frac{F(Li)}{\sum_{i=1}^n F(Li)} \right\}$$

가. M(월간 사용료) : M1 + M2 + M3 + M4 + M5

1) M1(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의한 사용료로 한다.

■ 월간 운영관리비 (C) = Ci × Op

- Ci = 월간 위탁관리비

- Op = 처리시설의 월평균 가동률 ($\frac{\text{월간 일평균유입량(m}^3\text{/일)}}{\text{시설용량(m}^3\text{/일)}}$)

※ 가동률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M2(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E_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F_i : 처리시설별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 처리시설 | 공사금액(원) |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
|---------|---------------|-----|-------------------------------------|
| | 1단계 | 2단계 | |
| 용인테크노밸리 | 8,073,661,000 | - | $\frac{2}{1,000} \times \text{입주율}$ |

※ 입주율이 80% 초과할 경우 1로 적용

- 3) M3(관로유지관리비) : 공공폐수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별도의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4) M4(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산출기준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 5) M5(추가비용)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기본배출부과금 및 개선비용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B_{Li} : 비용부담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kg) = {유량×(BOD+TOC+SS+T-N+T-P)}×1/1000
 - n = 입주 업체 수
- 다. F(L_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원인자 실제배출오염 부하량
- $$= \alpha Q_i \times \left(\frac{bBOD_i + cTOC_i}{2} + dSS_i + eT-N_i + fT-P_i \right)$$
- 1) Q_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일일배출량

2)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별 계수

| 구 분 | a | 비 고 |
|-----|-----|-----|
| 폐 수 | 1.5 | |
| 오 수 | 1.0 | |

나) BOD 계수

| BOD 값 (mg/l) | b | 비 고 |
|-----------------|-----|-----|
| BOD ≤ 300 | 1.0 | |
| 300 < BOD ≤ 400 | 1.2 | |
| 400 < BOD ≤ 500 | 1.4 | |
| 500 < BOD ≤ 600 | 1.6 | |
| 600 < BOD | 2.0 | |

다) TOC 계수

| TOC 값 (mg/l) | c | 비 고 |
|-----------------|-----|-----|
| TOC ≤ 270 | 1.0 | |
| 270 < TOC ≤ 360 | 1.3 | |
| 360 < TOC ≤ 450 | 1.6 | |
| 450 < TOC ≤ 540 | 2.0 | |
| 540 < TOC ≤ 630 | 2.5 | |
| 630 < TOC | 3.0 | |

라) SS 계수

| SS 값 (mg/l) | d | 비 고 |
|----------------|-----|-----|
| SS ≤ 300 | 1.0 | |
| 300 < SS ≤ 400 | 1.2 | |
| 400 < SS ≤ 500 | 1.4 | |
| 500 < SS ≤ 600 | 1.6 | |
| 600 < SS | 2.0 | |

마) T-N 계수

| T-N 값 (mg/l) | e | 비 고 |
|-----------------|-----|-----|
| T-N ≤ 100 | 1.0 | |
| 100 < T-N ≤ 200 | 1.2 | |
| 200 < T-N ≤ 300 | 1.4 | |
| 300 < T-N | 1.6 | |

바) T-P 계수

| T-P 값 (mg/l) | f | 비 고 |
|---------------|-----|-----|
| T-P ≤ 8 | 1.0 | |
| 8 < T-P ≤ 16 | 1.2 | |
| 16 < T-P ≤ 32 | 1.4 | |
| 32 < T-P | 1.6 | |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 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 한다. 이 경우 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 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 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 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times 0.9(오수전환율)

다)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times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 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의 경우

가)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1회 이상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할 수 있다.
 - BOD :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TOC : 85 mg/ℓ (기숙사 170 mg/ℓ)
 - SS :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별지 제1호서식]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 신청서 | | | | | |
|--|---------------|-----|-----------|-----|----------------|
| 신 고 인 | 상 호 또 는 명 칭 | | | | |
| | 성 명 (대표자) | | 생 | 년 | 월 일 |
| | 주 소 | | 진 | 화 | 번 호 |
| 사 업 장 | 소 재 지 | | 진 | 화 | 번 호 |
| | 업 종 | | 주 생 산 품 | | |
| | 착 공 예 정 일 | | 준 공 예 정 일 | | |
| | 건 물 면 적 (동 별) | | 부 지 면 적 | | m ² |
| 승 인 신 청 사 항 | | | | | |
|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_____m ³ /일 | | | | | |
|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단위 : mg/ℓ) | | | | | |
| 오염물질 | BOD | TOC | SS | T-N | T-P |
| 배출농도 | | | | | |
| ※ 기타 오염물질 : | | | | | |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_____m ³ /일 | | | | | |
| <p>「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 (인)</p> | | | | | |
| 용 인 시 장 귀 하 | | | | | |
| <p>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p> <p>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p> <p>3. 공장건물 배치도 1부</p> <p>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p> <p>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p> <p>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p> <p>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p> <p>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p>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번 호 제 호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서 | | | | | | | | | | | | | | | | |
| 상 호 또 는 명 칭 | | | | | | | | | | | | | | | | | |
| 성 명 (대 표 자) | | | 생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승인내용 및 조건 | | | | | | | | | | | | | | | | | |
| <p>■ 승인내용</p> <p>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_____m³/일</p> <p>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단위 : mg/ℓ)</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6.6%;">오염물질</td> <td style="width: 16.6%;">BOD</td> <td style="width: 16.6%;">TOC</td> <td style="width: 16.6%;">SS</td> <td style="width: 16.6%;">T-N</td> <td style="width: 16.6%;">T-P</td> </tr> <tr> <td>배출농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p>※ 기타 오염물질 :</p> <p>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_____m³/일</p> <p>4. 일평균 오염부하량 : _____kg/일</p> <p>■ 조건 :</p> | | | | | | 오염물질 | BOD | TOC | SS | T-N | T-P | 배출농도 | | | | | |
| 오염물질 | BOD | TOC | SS | T-N | T-P | | | | | | | | | | | | |
| 배출농도 | | | | | | | | | | | | | | | | | |
| <p>「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변경)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용 인 시 장</p> | | | | | | | | | | | | | | | | | |